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드합○○○(본소) 손해배상(사실혼파기)
2013드합○○○○(반소)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반소피고) 송AA

피고(반소원고) 황BB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상회복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5.경 지인의 중매로 만나서 교제하다가 2012. 3.경 상견례를 하고 2012. 6. 2. 결혼식을 올렸다.

나.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CC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DD부대를 제대하였으며, 가방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대학

을 졸업하지 아니하였고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명품가방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명품가방의 모조품을 판매하며 2006년경부터 상표법위반죄로 수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모조품 판매를 계속하다가 또다시 상표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4. 16.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노○○○○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7.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은 2012. 7. 1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대화하던 중 우연히 피고가 명품가방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상표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3. 1.경 피고가 CC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그 후 떨어져 지내기로 합의하여 2013. 2.경부터 원고는 신혼집, 피고는 본가에서 각자 생활하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2013. 3. 14. 22:00경 원고가 있는 신혼집에 찾아와 수차례 벨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다음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원고를 강제로 일으키고, 피고를 피하여 집을 나가려는 원고를 막으려던 과정에서 원고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전완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바.항 기재 사건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약○○○호로 약식기소되어 2013. 5.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정○○○호로 2013. 10. 21.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2013. 5.~6.경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가 혼수로 해온 가구, 주방·가전제품 및 원고의 옷가지, 보석류 등 개인물품 일체를 이삿짐센터에 맡겨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5. 11.경 신혼집에 원고의 물건을 가지러 갔으나 옷장 등이 비어있어 물건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였고 2012. 6. 3.경 재차 신혼집을 방문하였으나 일부 옷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건들을 찾지 못하였다.

자. 원고는 2013. 6. 14. 원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며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차. 원고는 2014. 5. 7.경 피고에게 순금 쌍반지와 18K 팔찌를 제외한 예물 일체를 반환하였다. 피고도 그 무렵 원고에게 이삿짐센터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중이던 원고 물건들 일체를 인계하였는데 원고가 물건들을 인계받을 당시 가구 및 가전제품들 중 상당수는 운반 내지 보관상의 과실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원고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가의 의류와 귀금속 대부분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원고는 일부 가구들은 집으로 가져가고 훼손이 심한 가구 및 가전제품들은 중고업체에게 헐값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8,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영상, 갑 제1호증의 1~3, 제5호증의 1~4, 제15호증의 1~1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식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피고는 원고가 예식비용으로 지출한 500만 원을 재산상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예식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7개월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의 실체를 형성하였던 이상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비용은 무용의 지출이라거나 이 사건 사실혼 파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짧은 기간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으므로 애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애결혼과는 달리 학력과 직업 등의 조건이 결혼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데, 피고는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결혼에 이른 점, 나아가 피고는 그의 실제 직업과 이로 인한 전과 및 실제 학력을 알게 된 원고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음에도 진실한 애정과 정직한 사과로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별거 중인 원고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원·피고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사실혼기간, 사실혼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정도,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원고가 고가의 옷가지와 귀금속 등 상

당수의 개인물건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가구 및 가전제품들이 훼손되고 가치가 저감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대로 이 사건 본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4.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집안일에 소홀하였고 고급승용차를 새로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피고가 거절하자 그 이후로 피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피고를 무시하였으며, 별거 이후 신희집에 원고 물건을 가지러 오면서 남성을 동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오빠와 올케가 부부사이를 이간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 결혼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4,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집안일에 소홀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잘못으로 원·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나아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등 참조),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를 상당기간 지속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결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사실혼기간이 짧아 결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사실혼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므로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